

제241회 영등포구의회
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『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』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11. 2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『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0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출연금 및 산출내역

- 출연금액: 24,114천원
- 산출기초: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00,944,189천원의
1만분의 1.2

※출연 가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 후, 2023 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4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 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및
제152조 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 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5. 검토의견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,

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임.
-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에서 정하는 비율(1만분의 1.2)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사업비의 출연은 의무사항임.

○ 검토결과

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,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음.
-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,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 지방세기본법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3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~ 5.(생략)